

체류 지속 제도에 관한 사실들



사실 법 집행관은 피해자를 식별하는 즉시 CP 적격성에 대한 신속한 초기 결정을 내리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권고 받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법 집행관이 관련서류를 인터뷰에 지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확실하게 피해자인 것으로 보인다면 법 집행관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CP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실 때로는, 피해자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바로 협조에 응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상상 인신 매매 피해자 임이 확실하고 잠재적인 증인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CP가 적합합니다.

사실 법 집행관은 까다로이 선별하지 말아야하며 이민 신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만약 있을 수사과정에서 잠재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모든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 CP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실 CP는 노동 매매 및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실 CP를 요청하는데 있어서는, 그 어떤 종류의 고발사건이나, 계류중 혹은 현재 진행중인 기소 상황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임시체류허가(CP)가 있어야 미국에서 근로 허가, 연방 혜택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년 체류 갱신이 승인되기 때문에 CP 적격 피해자들에게는 CP 대신 유예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혜택은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유예 조치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추방 방지와 같은 특정 제한 상황에서만 적절히 이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만약 수해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주하거나, 여행 허가서와 같은 재 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떠나거나, 이민 혜택을 받거나, 인신 매매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CP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실 긴급 상황이 아닌 한 CP 수해자들은 출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긴급 상황이라면, 여행 후 재 입국에 필요한 허가서를 여행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도 포함 가능함

법 집행 기관은 또한 다음과 같은 특정 가족 구성원들이 미국에있는 CP 수해자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1 세 미만의 CP 수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미혼 형제 자매 (18 세 미만);
- 21세 이상의 CP 수해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CP 수령인이 인신매매에서 탈출하거나 법집행기관과 협력해서 수령인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가 현재 위협에 처한 경우.

T 비자

인신 매매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T 비자라고 하는, USCIS에 의해 발급되는 장기 이민 혜택인, T 비이민 신분을 USCIS에 신청할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인신 매매 피해자들은 길게는 4년 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합법적인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T 비자에 관해자격조건을 갖춘 이민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CP수혜는 T 비자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신매매범의 수사나 기소를 지원했거나, 지원 중인 피해자가 T 비자를 요청할 때, 연방·주·지방 법집행기관은 피해자 중심 접근법에 따라 T 비자 신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연락처 정보

인신매매 대응 센터(CCHT)
ContinuedPresence@ccht.dhs.gov

CCHT는 모든 임시체류허가 요청을 처리하고 법집행기관에 교육을 제공하며, 이의 이용을 권장합니다.

현지 HSI 지방사무소
<https://www.ice.gov/contact/hsi>

인신 매매 범죄를 신고하시려면 현재 근무중인 요원 또는 인신 매매 담당 부서로의 연결을 요청하십시오. CP를 요청하려는 주 정부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은 필요한 양식과 지침들을 제공할 수 있는 가석방 담당자와의 연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HSI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866-872-4973 또는 victimassistance.ice@dhs.gov
범죄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피해자의 질문에 답하고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의뢰하는 미국 전역의 연방 피해자 지원 요원을 지원합니다.

CP 비디오

CP가 무엇인지, 자격 대상은 누구인지, 요청 방법은 무엇인지, 3 부로 구성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비디오는 교육 목적 및 데스크 포스 회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디오와 임시체류허가에 관한 기타 자료는 <https://www.dhs.gov/blue-campaign/law-enforcement>에서 찾아 보십시오.



Center for Countering Human Trafficking

체류 지속 제도

인신 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 이민 구제





배경

인신매매 대응 센터(CCHT)는 인신매매 조직의 파괴와 해체 그리고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일의 핵심은 미국 전역의 법집행 기관에서 요청하는 임시체류허가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체류 지속 제도란 무엇입니까?

체류 지속 제도 (CP)는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심각한 형태의 인신 매매” 피해자들로 확인된 개인들, 또한 앞으로 잠재적인 증인이 될수있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임시 이민 구제 조치입니다. CP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그들에게 저질러진 인신 매매 관련 범죄들에 대한 조사 및 인신 매매범들에 대해 해당 피해자들이 제기한 18 U.S.C. § 1595에 따른 모든 민사 소송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CP는 일차적으로 2년의 기간을 허락하며 다음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CP 수혜자들은 또한 연방 정부의 복리 후생 혜택들과 서비스들을 받게 됩니다.



체류 지속 제도의 중요성

CP는 피해자들에게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통해 추방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은 추방 위협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켜, 피해자들을 안정시킬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므로 CP는 연방,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들이 진행하는 인신 매매 관련 범죄들의 수사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며, 그로인해 보다 많은 성공적인 기소를 이루어낼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CP의 일상적인 사용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단체와의 신뢰를 쌓아주며, 법 집행관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얻을수있게 되며, 수사에 적극 참여하는데 있어 보호를 받을수 있음을 알려줄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심지어 더 많은 피해자들과 인신 매매범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법 집행 기관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체류 지속 제도는 어떻게 요청합니까?

잠재적 증인이 수도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임이 확인되는 즉시, CP 신청 절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CP는 인신매매의 조사나 기소를 담당할 연방, 주, 지역 법 집행기관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 지역 요청 기관은 연방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정 POC를 통해 CCHT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연방 기관의 예시에는 HSI, FBI, DSS, DOL, EEOC 및 모든 USAO가 포함됩니다. 가장 가까운 HSI 현장 사무소에 연락하여 가석방 조정관에게 적절한 양식과 제출 지침을 요청하십시오.

민사 소송 관련 요청의 경우 가장 가까운 HSI 현장 사무소에 연락하여 피해자 지원 전문가를 요청하고 불만 제기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필요시, CP 만료일로부터 60일 전에 CP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체류허가를 승인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CCHT는 미국 전역 법집행기관의 모든 CP 요청을 처리합니다. CCHT는 승인 후 보건 복지부(HHS)에 통지하고, 보건 복지부는 피해자가 연방 혜택 및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를 발급합니다.¹ CCHT는 또한 USCIS에 통지하고 USCIS는 피해자의 목적지를 알려 주는 I-94 (도착-출발 기록) 양식과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 허가 서류를 발급합니다. CP를 요청한 법집행담당관이 해당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은 CP 신분임을 증명하는 I-94 및 EAD 외에도, 본인 케이스 담당관 및 피해자 지원 전문가의 이름과 전화 번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필요시 요청에 따라 이민국이나 다른 법 집행관들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심각한 형태의 인신 매매”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연방 법률 정의에는 다음의 대상이 된 개인을 포함합니다:

- 성매매 - 상업적 성매매를 목적으로 강제로, 사기에 의해, 강압에 의해 모집, 소집, 운반, 제공, 획득, 권장 혹은 권유되어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된 사람이 18세 이하인 경우,
- 노동 매매 - 강제,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해 강제 노역, 채무 노역등을 목적으로 모집, 소집, 운반, 제공되어진 노예 상태인 경우.

